

	중 국 어 업 제 도 2020년 10월 14일(수)	배 포	해외수산협력센터
		부 서	국제협상지원팀
		작 성	중국어 전문관
		연락처	leeji5877@kofci.org

중국의 감시감독통제(MCS) 시스템

- 중국의 선박등록 절차
- 중국 선박 감시감독통제(MCS)시스템

1. 중국의 선박등록 체계

중국의 선박등록 절차1)

- 신청 → 수리 → 심사 → 선박등록부에 기재 → 증명서 발급
- 선박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신분증과 기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선박 소유권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선박소유권 취득증명서, 선박기술자료, 선박사진(가로, 측면, 선미, 연통), 공동소유선박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자료 등

2. 중국의 선박 MCS 시스템

MCS시스템2)

-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정의 : 감시감독통제(MCS)시스템 : 국제 어업 관리조직의 회원 혹은 관련 국가가 자국 조업어선이 어업활동을

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7/content_5210514.htm

2) <https://baike.baidu.com/item/%E6%B8%94%E8%88%B9%E7%9B%91%E6%B5%8B%E7%B3%BB%E7%BB%9F/19514110?fr=aladdin>

종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자원보호 및 관리조치

* 중국어 검색 키워드: 渔船监测系统/渔船监测, 控制和监督系统

- 국제어업관리의 추세에 따라 2007년부터 중국은 원양어업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어선항행과 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농촌부는 모든 원양어선에 기간과 그룹을 나누어 선박 위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13년 3월까지 원양어선 위치모니터링시스템은 128개의 원양어업 기업과 1899척 원양어선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내 각지역은 어선 ‘동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함
- 최근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선 위치모니터링 관리 방법³⁾’ 이라는 법을 공포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어선은 원양어업조업을 할 때 GPS위치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꺼서는 안된다.
 - 매일 6회 이상의 선박위치보고를 해야한다.
 - 고장난 모니터링 설비의 수리는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어선위치 수동보고는 1년에 누적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누적 60일 초과 후 선박위치 모니터링 일수는 기입하지 않는다.
 - 선박 위치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원양어선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AIS) 을 설치해야 한다.
 - 농업농촌부의 선박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의 관리대상이 되는 원양어선은 농업농촌부로부터 매년 연간심사를 받는다.

3. 중국 선박 MCS 시스템 위반 처벌 규정과 사례

□ 원양어선 위치 모니터링 관리방법 상의 처벌 규정

- 농업농촌부는 2014년 ‘원양어선 위치모니터링 관리방법’ 을 공포하였음
- 감독관리 제26조에는 위치모니터링시스템 고장시 수동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3) http://www.gov.cn/xinwen/2019-08/19/content_5422285.htm

- 제27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끄거나, 손상시키거나, 철거, 이동시키거나 고의로 고장을 내 거짓 보고하는 경우, 혹은 스스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관련 어선 정책보조금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
- 기타사항 제29조에는 “어떤 기관 기업, 개인은 모두 어선 위치의 원래 데이터에 대해 가감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규정
 - ** 상세 처벌규정은 각 성 지방정부마다 다름

□ 관련 사례

- 2015년 5월⁴⁾

39개의 기업소속의 233척 어선이 하이난에서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중국의 GPS)을 끈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음
하이난시는 한 척당 5000위안(약87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함
- 2020년 8월⁵⁾

에콰도르 해안에서 49척의 중국 어선이 위성GPS시스템을 끈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에콰도르 해군이 밝혔음
이에 대해 중국 자오리지엔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업관련 주관부서는 공해에서 조업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조업어선에 대해 가장 엄격한 관리통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 관련 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밝힘

 - ☞ 그 후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보이지 않음

4) <https://baijiahao.baidu.com/s?id=1675450893783538222&wfr=spider&for=pc>

5) <https://news.163.com/20/0819/18/FKDQ0MSA00018AOR.html>

<http://www.hinews.cn/news/system/2015/05/20/017583613.shtml>